

# 會員의 質疑應答

## 〈새마을 공장 건립에 관한 질의〉

질의자 : 이 총일 ('74. 3. 21)      회신 : 건설부 장관 ('74. 3. 21)

問 1. 건축법 시행령 제142조 12항에 읍면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및 농지지역내에서는 새마을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바, 시 도시계획구역인 타 읍면의 주거지역 및 농지지역 내에서도 새마을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그 여부는?

答 1. 건축법 시행령 제 14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및 농지지역에서의 새마을 공장은 읍·면의 도시계획 구역내라 할지라도 주무부 장관이 건설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것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시의 도시계획 구역에서는 새마을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2 및 별표3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및 동령별표 8에 해당하는 것 제외)을 건축할 수 없읍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42조 제12항에서 읍·면의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시의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읍·면의 관할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소재지의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계획 구역을 말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의 목적인 지역의 순화, 공해방지 등의 면에서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42조 제12항의 규정은 완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전화국선의 인입배관 설치에 관한 질의〉

질의자 : 전남지부장('73. 9. 5)      회신 : 체신부장관 ('73. 10. 5)

問 1. 건축법 시행령 제 1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 660평 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전화국선이 인입되도록 배관, 배선 및 단자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 대지내에 관리실이 별동으로 있고 용도상 전화가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660평 방미터 이상의 창고, 교실 등을 별동으로 건축하는 경우의 전화국선의 인입배관, 배선 및 단자함의 설치여부는?

答 1. 본 건축물과 별동으로 건축되고 전화가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창고, 교실 등에 관하여는 전화국선의 인입 및 배관시설의 설치는 그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건물에 전화가입청약 또는 전화기 설치 장소 변경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없는(전신전화규정 제224조 및 제225조) 것이오니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 〈건축법 및 동 시행령 중 연면적에 대한 질의〉

질의자 : 대한건축사협회 ('73. 6. 19)      회신 : 건설부장관 ('73. 9. 1)

問 1. 건축법 시행령 제 6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종의 바닥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연면적이라 함은 동일 대지내에 있는 각동의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닌 일동의 건물의 각종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전의 회신을 바랍니다.

答 1. 건축법 시행령 제 3조 제 4호에 계기한 연면적은 적용의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됨.

### 가. 지하층 설치기준

지상층의 연면적을 말하여 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를 말함.

나. 공사 감리자를 정하여야 할 건축물의 규모 및 소방법에 의한 협의 대상 건축물의 규모:

각동 단위로 계산함.